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3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안철수 · 김석기 · 김은혜

김승수 · 김민전 · 주호영

인요한 • 윤상현 • 유용원

조승환 • 고동진 • 김 건

권영세 · 김성원 · 김태호

김형동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 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 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
	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
	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
	된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운전
	자는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